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직위 불 부합 인사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,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

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정원관리기관별

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하며

「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제3조에 따르면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·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·직렬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르면 강원도 본청의 보좌·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8)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강원도에서는 ○○○○실장과 ○○○○○○국장 직위에 각각 2~3급, 3급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보해야 함에도 ○○○○실장에는 지방○○○(○급) ○○○를 , ○○○○○○국장에는 지방○○○(○급) ○○○을 2016. 7. 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임용함에 따라 직위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

[표] 직위 불부합 현황

○○○○실장 (2~3급)	-	'15. 7.22.~ '15.12.15 ○○○(3급)	'16. 1. 1.~ '16. 6.30 ○○○(3급)	'16. 7. 1.~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(4급)
○○○○ ○○국장 (3급)	'13.10.17~ '14. 1. 1. ○○○(3급)	'14. 1. 2.~ '15. 1. 1. ○○○(4급, 직대)	'15. 1. 2. ~'16. 6.29. ○○○(3급)	'16. 7. 1.~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(2급)

※ 자료 :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무 분장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8) ① 강원도 ○○○○실 : 이사관·부이사관(2~3급), ② 강원도 ○○○○○○국 : 부이사관(3급)